

## 遠洋漁業의 漁場環境變化와 國際化 推進戰略

柳時融\*

### 〈目次〉

- I. 引言
- II. 遠洋漁業의 環境變化
  - 1. 新海洋 秩序의 擡頭
  - 2. 漁場環境의 變化
  - 3. 沿岸國 入漁料引上 및 漁業協定 締結
- III. 遠洋漁業 國際化 戰略의 代案
  - 1. 沿岸國의 漁業政策
  - 2. 漁場 開發進出方法
  - 3. 共同事業方法
  - 4. 漁業移民方法
  - 5. 海外直接投資方法
- IV. 謂語
- 參考文獻

### I. 引言

韓國의 水產業은 오래전 부터 우리의 食糧經濟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 바, 이는 農業이 주로 主食인 糜을 생산하는데 비해 副食을 생산 공급하는데 있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生化學研究所에서 나온 한 보고서에 의하면 水產物은 단백질, 비타민, 요오드, 磷複合物 및 鎳物質등의 중요한 영양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價值있는 기호식품이라고 한다<sup>1)</sup>

\* 海洋研究所 先任研究員·經營學

1) 洪裕洙外 3人, 韓國水產業의 現況과 展望에 관한 調查研究, 海양개발연구소, 1979. 1.

수산물은 한국인의 동물성단백질원으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食品消費는 인구증가 및 소득향상에 따라 量的增加는 물론 質的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食品消費形態의 변화에 따라 동물성단백질 소비는 1人 1日 消費量이 '80년 20.2 g에서 '85년에는 28.5 g으로 41% 증가하였다.<sup>2)</sup> 또한 水產物의 단백질 供給寄與度도 '80년 53%에서 '85년 58%로 증가하여 수산물이 國民動物性 단백질의 주요공급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1. 動物性 蛋白質 摄取量 推移(1人 1日當)

년 도	계(A)	축 산 물	수산물(B)	單位 : g
				B/A(%)
1970	10.7	4.1	6.6	61.7
1976	17.1	5.8	11.3	66.1
1980	20.2	9.5	10.7	53.0
1983	25.5	10.6	14.9	58.4
1985	28.5	12.1	16.4	57.5
1986	30.9	13.2	17.7	57.3

資料：농촌경제 연구원, 식품수급표, 1987.

이처럼 중요한 동물성단백질 공급원인 수산물의 생산을 보면, 1987년에 沿近海漁業에서 153만 M/T, 養殖業에서 87만 M/T, 遠洋漁業에서 88만 M/T, 內水面漁業에서 6만 M/T으로 합계 333만 M/T를 生產하였다. 그런데, 앞으로의 生產 增加 가능성을 보면, 沿近海漁業이 人工魚礁 施設, 種 苗 大量生產 등 資源造成과 漁撈技術 發達로 다소 늘어난다 하더라도 漁場縮小 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生산수준에서 크게 초과하기는 어려우리라 예상되며, 그 이상의 增產은 資源保護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淺海나 內水面에서의 養殖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遺傳工學 技法의 도입, 高密度飼育 技術의 개발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반면 大規模干拓事業, 養殖場의 자체 汚染 또는 外部로 부터의 오염 내지 富

2) 鄭聖哲, 韓國의 水產物 需給分析, 해양연구소 기본연구보고서, 1986. 3.

營養化등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실정이다.<sup>3)</sup> 따라서, 全生產物 중 30%나 차지하는 遠洋漁業部門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변동이 없게 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수산물 수요전망에 의하면 1986년의 232만 M/T(수출제외)에서 2001년에는 400만 M/T으로 증가된다고 한다. 여기에 輸出需要 100~110만 M/T을 합친다면 2001년의 水產物需要는 500~510만 M/T으로 지금보다 약 200만 M/T 이상의 增產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需要量에 대한 供給 期待值를 예상해 보면 沿近海漁業에서 200만 M/T, 養殖業에서 100만 M/T을 공급한다고 보더라도 遠洋漁業과 輸入을 합하여 200만M/T을 공급해야 되며, 앞 두 부문의 공급이 출면 그만큼 後者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수산물 공급의 海外依存度는 현재의 30%수준에서 40~50%로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국내 수산물 공급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원양어업은 현재 전증하는 자원보호주의 및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의 대두로 말미암아 外的環境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날로 악화되는 원양어업의 국제환경을 감안하여 난국 타개책의 하나인 국제화 방안에 관하여 그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여 最適 方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遠洋漁業의 環境變化

### 1. 新海洋 秩序의 擡頭

자원민족주의의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듯이 최근 세계 연안국들은 해양 생물자원의 경제적 무기화와 해저대륙붕의 광물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영해를 확장하고 광활한 경제수역 제도를 채택하여 왔다.

이에따라 모든 국가의 주권을 정당히 고려하여 국제교통을 촉진하고 해양의 평화적사용, 해양자원의 효율적이용, 해양생물의 보존 및 해양환경의 연구·보호·보존을 증진할 「해양에 관한 법적 질서화법」을 목적으로 하는

3) 李秉錡, 遠洋漁業의 새로운 展開方向, 한국수산학회 1987년도 추계심포지움보고서, 1987. 8.

UN 해양법협약이 1982년 12월 10일 자마이카에서 채택되었다.

그후 自國의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한 나라는 140개 연안국 중에서 97개국이며, 이로 인하여 전 해양의 40%정도가 연안국의 主權水域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公海水域은 수심, 영양염류, 어군군집조건 등으로 인해 일부 참치 및 오징어 이업을 제외하고는 원양어업에 비경제적인 海域만이 남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表 2. 200海里 水域宣布國 現況(1988. 5. 現在)

	沿岸國數	宣 布 國 數				未 宣 布 國 數
		計	領 海	漁業水域	經濟水域	
計	140	97	15	20	62	43
아프리카	37	26	7	4	15	11
아시아	20	16	—	3	13	4
南·北美	33	29	8	4	17	4
유럽	24	13	—	7	6	11
중동	15	2	—	—	2	13
오세아니아	11	11	—	2	9	0

資料：수산청, 국제협력 담당실

## 2. 漁場環境의 變化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業種을 크게 나누면 다행이(참치)漁業, 오징어漁業, 트롤漁業으로 분류된다. 다행이어업은 延繩과 旋網어업으로 나눌수 있으며, 延繩어업은 海外基地式 操業方法과 獨航式 方법으로 구분된다. 오징어어업은 流刺網과 채낚기漁業으로 구분되며, 트롤어업은 원양어업중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원양생산량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트롤어업은 다시 명태, 가자미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北洋 트롤漁業과 海外基地 트롤漁業, 새우 트롤어업으로 분류된다.<sup>4)</sup> 이하에서는 이렇

4) 수산청,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88.4

게 분류된 業種別로 漁場環境의 變화動向을 분석하여 원양어업의 당면과제 도출에 기반을 삼고자 한다.

### 가. 트롤어업

#### (1) 北洋트롤어업

북양트롤어업은 미국의 200해리 경계수역내에서의 쿼터조업과 韓·美共同漁業事業, 그리고 베링公海操業과 북해도 周邊水域操業으로 구분되며, 46 척의 대형트롤漁船이 연간 70만 M/T을 어획하며 우리나라 전체 원양어업 생산량의 약 62%(1987년)를 점하는 중요한 어장이다.

그러나 北洋트롤漁場중에서 미국수역(베링해, 알루우션, 알라스카만)의 직접쿼터는 '84년 33만톤에서 '85년 25만톤 '86년 12만톤, '87년 3만톤 '88년 외국에 대한 직접쿼타 할당유보 등으로 제로화되었다. 한편, 쿼터조업 보다 4~5배나 비싼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수입이나 다름없는 공동사업(JV) 물량도 미국의 水產政策基調가 資源의 自國化로 귀착되면서 對外國 공동사업쿼터가 '87년의 153만톤에서 '88년에 118만톤, '89년은 29만톤으로 대폭 감축되었으며, '90년 이후는 제로화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의 어업자 단체인 AFTA(알라스카 가공선조합)가 미국정부, 연방의회, 북태평양 어업관리위원회등에 대해 베링공해를 폐쇄할 것을 '89년 1월 촉구했으며, 3월 美上院이 베링공해의 다른 한 연안국인 소련과 협력하여 “베링공해 어업의

表 3. 北洋 美國水域의 직접쿼타 및 공동어업 실적

單位 : M/T

년도	직접쿼타				공동어업		
	쿼터량	소진량	소진율(%)	출어척수	미국전체계획	한국실적	척수
1983	324,690	272,668	83.9	28	385,438	57,323	15
1984	329,757	268,432	81.4	27	823,809	98,166	22
1985	250,219	221,294	88.4	27	950,784	176,767	28
1986	116,169	98,596	84.9	28	1,281,628	375,570	30
1987	32,400	3,182	9.8	27	1,530,000	447,840	31

資料 : 수산청,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88

한국수산회, 수산연감, 1988

모라토리움(전면금지)"를 달성하도록 결의한 사실 등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의 수산정책변화가 그 원인이다.

### (2) 大西洋 트롤어업

1966년 수산개발공사에서 라스팔마스기지를 개발, 트롤어선 10척을 투입한 이래 모리타니아, 모로코, 기니, 세네갈, 기니비사우등 중동 대서양 연안국에 진출, 70년대 중반 100여척이 출어하여 10만톤 이상을 생산한 바 있다. 그러나 '80년 이후 연안국의 自覺에 의한 어업규제와 이에 따른 어장축소, 어획감소, 魚價의 상대적 低上昇, 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등으로 말미암아 주어장인 모리타니아 어장을 상실한 이후 '88년 출어 억수 37척, 생산량 33,300톤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연안국의 자원에 대한 인식제고, 어로기술 이전으로 인한 한국조업선 축출, 연안어업의 특성상 자원고갈 등으로 비롯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연안국들이 입어료를 과다 요구(척당 20만\$ 이상)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경제원조를 요청하고 있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10여개의 입어 가능국 중 현재 우리나라의 트롤어선이 입어권을 가진 국가는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및 시에라레온의 4개국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어장성이 좋은 모리타니아, 모로코, 세네갈해역 등까지 원정 또는 불법조업을 강행, 연안국과의 갈등, 별금부과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 (3) 새우트롤어업

지난 69년 제동산업(수산개발공사)이 수리남근해에 진출하면서 시작된 새우트롤 어업은 비교적 자원이 풍부한데다 소규모어선으로 연안에서 조업, 안정성 높은 업종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79년 주어장인 수리남의 200해리 선포와 '81년 해면어업규제법 발효, 브라질 어장조업의 실패등으로 어업환경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즉, 지난 77년 130척에 달했던 조업선이 88년말 기준으로 75척으로 감소하였으며, 어획량도 주어장인 수리남조업선만 대상으로 할 때 83년 이래 해마다 감소하여 '88년 어획고는 1,650톤에 불과하였다.

새우트롤어업은 전량수출업종으로 外貨稼得率이 100%인데다 소규모어선 어업이며 沿岸漁業으로 조업위험성이 적어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경영이 가능하고, 또 새우의 생물학적 특성상 자원회복도가 빨라 합리적 자원관리

를 통한 어업경영을 해나간다면 안정적조업이 가능한 업종이다. 세우트롤 어업의 가장 큰 문제는 한 어장에 너무 많은 조업선이 몰려 있다는데 있다. 연안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각종 조업경비부담은 늘고, 이에 따른 채산성악화로 어획강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자원이 고갈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表 4. 트롤어업 출어척수 및 생산·수출추이

구분 년도	대 서 양 트 롤 어 업			세 우 트 롤 어 업		
	어선(척)	생산(톤)	수출(천 \$)	어선(척)	생산(톤)	수출(천 \$)
1980	76	53,385	92,090	112	2,949	25,300
1981	75	70,923	120,782	111	4,005	33,609
1982	69	66,814	85,402	701	2,865	31,580
1983	62	54,806	75,490	107	2,735	31,398
1984	60	52,524	75,841	107	2,295	25,114
1985	52	47,218	74,393	107	2,088	19,559
1986	58	42,683	76,109	95	2,743	28,881
1987	85	42,520	61,938	93	3,465	33,800

資料 : 한국수산회, 수산연감, 1988

#### 나. 참치어업

##### (1) 참치 延繩漁業

날개다랑이를 주로 어획하여 통조림 원료로 공급하는 해외기지식 연승어 어업은 지난 80년만 해도 조업선이 2백척이 넘었으나 84년 부터 어가하락 등 경영압박으로 조업선이 줄어 '88년 68척으로 줄었다. '86년 이후 어가가 회복세를 보여 \$1,950~2,250/ton으로 올라가는 등 형편은 나아졌으나, 기지船 대부분이 船齡 15년 이상된 노후선으로 통조림 원료를 어획대상으로 하는 태평양기지선은 조업이 가능하나 횟감용을 어획하는 대서양 및 인도양 기지선은 냉동시설의 문제를 갖고 있다. 더구나 투발루(Tuvalu), 쿡(Cook)등 조업국들의 임어료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어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70년대초 일본의 횃감용 참치 수요증가로 對日輸出을 위해 시작된 독항식 참치 연승어업은 75년경 초저온 냉동시설을 갖춘 독항선이 증가하면서 성장했으나 70년대 후반 연안국의 어업규제와 油價引上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 조업선이 '84년 156척까지 줄었다가 '86년부터 魚價가 회복되어 조업선이 최근 199척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태평양수역의 주요도서국들이 자원자국화 정책을 강화, 매년 높은 입어료를 요구해오고 있다. 즉 프랑스領 수역의 경우 '87년 273만 프랑(44.7만 \$)였으나 '88년 285만 프랑(46.8만 \$)로 인상되었고 쿠수역은 '87년 7.6만 \$에서 '88년 8.3만 \$로, 키리바시는 '87년 50만 \$에서 '88년 60만 \$로 인상되었다. 더구나 '88년 부터 개최된 한·일·대만 3국간 참치문제 정기협의회 등으로 일본이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으로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表 5. 참치연승어업의 出漁 및 生產 추이

單位 : M/T

구분 년도	獨 航 式		基 地 式		計	
	척 수	생 산	척 수	생 산	척 수	생 산
1981	208	56,000	199	51,000	407	107,000
1982	185	63,273	141	43,224	326	106,497
1983	169	56,214	101	26,043	270	82,257
1984	156	48,223	69	17,253	225	65,476
1985	156	63,056	64	30,034	220	93,090
1986	167	65,330	61	30,071	228	95,401
1987	189	69,026	60	18,411	249	87,437

資料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 연보, 1988

## (2) 참치 旋網 漁業

참치漁業의 주축을 이루어왔던 참치 延繩漁業과 가다랭이 채낚기어업이 貨金引上 등 漁撈原價의 上昇으로 인해 經營收支가 한계점을 드러낸 결과, 對象資源이 가다랭이 및 황다랭이 등으로서 아직 資源의 개발여지가 많고, 沿岸國들의 조업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참치 旋網어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참치선망어업의 특성은 광범위한 어장에서 고도의 회유성 어종인 참치를 대상으로 魚群探索用 헬리콥터와 최신의 電子通信장비를 구비하여 대형어 망으로 포획하는 어법으로 현존어업중 가장 자본집약적이고 技術집약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참치선망어업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다 고급인력기술의 확보, 관로개척 및 魚價의 不安定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조업수역에서의 경쟁조업으로 채산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주어장인 서부 태평양상의 연안국가에 지불하는 入漁料도 높아지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表 6. 참치 旋網漁船 보유 및 생산추이

年 度	隻 數	生 產 量 (M/T)
1980	2	544
1981	3	2,044
1982	10	12,209
1983	11	16,216
1984	12	14,183
1985	11	11,279
1986	14	28,000
1987	20	63,303

資料 : 한국수산회, 수산연감, 1988

#### 다. 오징어漁業

##### (1) 오징어채낚기 漁業

오징어채낚기 어업은 '78년 이후 뉴질랜드 및 호주와의 漁業協定締結에 의해 매년 할당되는 쿼터에 의거 주로 조업하여 왔으나 1985년도에 아르헨티나 연안의 포클랜드 및 파타고니아 등 남대서양 新漁場이 개발되면서 풍부한 자원, 높은 어획고로 각광받고 있다.

이 漁場은 1일 척당 어획량 20~30톤을 어획할 정도로 높은 어획율을

보이고 있으나, 漁場이 원거리에 위치, 항해기간이 길어 操業경비가 많이 들고 조업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다. 더구나 포클랜드 수역의 자원보호를 위해 '87년부터 포클랜드 잠정어업보존수역(FICZ)을 설정, 자원관리를 해온 영국정부가 최근 자원보호를 더욱 강화, 조업개시일도 3월 15일로 조업기간을 줄이는 한편 越線조업의 철저단속은 물론 FICZ설정을 계기로 公海操業까지 규제하려 들고 있다.

이와 함께 이 水域자원의 지속적이용은 물론 入漁料로 포클랜드 개발을 계획하고 入漁料의 대폭인상, 현지대리인을 통한 入漁창구의 의무화 등으로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오징어, 민대구 등 대중어종을 연간 50만톤 가량 잡을 수 있는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아르헨티나 연안 파타고니아어장에 대해서도 현지투자 방식을 제외한 신규입어不許라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어업정책 전환으로 어획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 (2) 오징어 流刺網어업

참치연승어업의 부진에 따른 대체자원개발의 일환으로 '79년 시작된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어업은 年조업선 150척, 어획고 8만톤, 생산액 7백억 원에 이르는 업종이다. 이 업종은 공해상 조업으로 임어료가 필요없고 가득률 또한 100%이며 어망등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나 고용증대효과가 큰 업종이다.

그러나 어업허가가 까다롭지 않고 적은 자본으로도 참여가 가능해 보유 어선 1~2척에 불과한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며, 선령 또한 20년 이상된 노후어선들이 많다. 또한 公海上의 조업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미국起源의

表 7. 오징어어업 業種別 출어척수 및 생산량

년 도	채낚기어업		유자망어업		년 도	채낚기어업		유자망어업	
	척수	생산(톤)	척수	생산(톤)		척수	생산(톤)	척수	생산(톤)
1981	12	5,571	34	8,872	1985	53	11,809	98	58,623
1982	27	5,974	60	16,695	1986	51	45,917	117	43,028
1983	20	1,568	99	30,268	1987	67	86,311	140	62,852
1984	25	5,949	111	42,977					

遡河性 魚種과 해양동물 및 해조류 보호를 목적으로 '87년말 유자망어업 규제법을 제정하고 북태평양에서의 유자망어업을 규제하려 들고 있다.

### 3. 沿岸國 入漁料 引上 및 漁業協定締結

#### 가. 入漁料 支拂額引上

入漁料 支拂에 의한 沿岸國 入漁는 200해리 海洋法시대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入漁形態인데, 우리나라 원양업체들이 그동안 沿岸國에 入漁하는데 지불한 入漁料 實績은 <표 8>과 같다. 즉 1977년에 3,959천弗을 지불한 아래 매년 그 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1984년에 26,050천Fr에 이르러 1977년에 비해 6.6배가 되었으며, 1985년 이후는 연안국의 합작투자선호 등 수 산정책변화로 入漁料가 감소추세에 있다. 년도별로는 1980년, 81년이 전년

表 8. 主要國別 入漁料 支拂實績

單位 : 천 \$

국별 업종 년도	모리타니아 트롤	기니 트롤	미국 트롤	모로코 트롤	뉴질랜드 오징어, 채 낚기, 트롤, 참치연승	기타	계
1977	3,592	—	306	—	—	—	3,898
1978	3,676	—	432	—	854	5	4,962
1979	1,608	1,131	1,201	946	655	584	6,125
1980	4,474	2,621	2,584	873	132	1,190	11,874
1981	7,921	351	4,428	6,679	254	2,205	21,838
1982	8,310	317	6,124	8,522	270	2,386	25,929
1983	3,034	913	8,326	2,614	593	5,596	21,076
1984	5,635	1,213	8,266	2,333	660	7,943	26,050
1985	8,804	1,258	7,475	388	463	7,269	25,657
1986	5,752	2,053	4,560	—	528	10,844	23,737
1987	3,369	2,044	244	—	852	16,184	22,693

資料 : 수산청, 원양생산담당관실 작성, 1988.

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국가별로는 모리타니아, 美國의 순이었으나 1987년은 포클랜드(영국)에의 입어료가 4,833천弗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 나. 漁業協定締結

200海里 經濟水域의 宣布는 國際的으로 漁獲量 배분을 위한 多者間 協定대신 雙務協定으로서의 漁業協定의 締結을 擴大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漁業協定에 포함하는 내용은 신해양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沿岸國入漁 漁船隻數, 操業海域, 漁獲量 quota, 入漁料 支拂, 漁獲物의 沿岸國港口에의 揚陸, 沿岸國 漁民의 訓鍊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정작 沿岸國으로서는 自國 漁業開發을 위한 資本 및 經濟援助, 技術支援등을 더 바라고 있으므로 漁業協定 체결시 이들 사항의 포함을 강력히 妥協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신해양법 시대를 맞이하여 沿岸國과의 漁業協定締結을 서둘러 왔는데 1988年末 현재 우리나라의 漁業協定締結 現況을 살펴보면 表 9와 같다.

表 9. 우리나라의 漁業協定締結 現況(1988年末 현재)

締結對象國	締結日	有効期間
日 本	'65. 6.22	'65.12.18 - 無期限(12個月前 通告時 終了)
이 란	'77. 5.11	'78. 4. 1 - 無期限( " )
뉴질랜드	'78. 3.16	'78. 3.16 - '90.9.30(3次延長)
투 발 루	'80. 6.18	'80. 6.18 - 無期限(6個月前 通告時 終了)
쿡아일랜드	'80. 8.25	'80. 8.25 - 無期限( " )
프 랑 스	'80. 9.19	'80. 9.19 - 無期限( " )
솔 로 몬	'80.12.12	'80.12.12 - 無期限(12個月前 通告時 終了)
키티바티	'80.12.18	'80.12.18 - 無期限(6個月前 通告時 終了)
美 國	'82. 7.26	'83.4.28 - '89.7.1(一部 改定 및 延長)
호 주	'83.11.23	'83.11.24 - 無期限(12個月前 通告時 終了)
모리타니아	'84. 1. 7	'84.1. 8 - 無期限(6個月前 通告時 終了)
에쿠아도르	'84. 5.22	'84.9.19 - 無期限( " )

資料：수산청 국제협력담당실 작성

#### 다. 沿岸國의 合作投資事業 要求

200海里 經濟水域 宣布는 沿岸國에 대해서 일방적 利益을 가져온 반면 漁業先進國에 있어서는 일방적 損失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沿岸開途國은 管理權을 행사할 수 있는 漁業資源을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開發, 利用하는데는 資本, 漁業技術, 經營技術, 漁業資源에 대한 情報, 下部構造등의 物的施設 및 公共서비스의 부족으로 당장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특히 沿岸國으로서는 自國經濟水域內의 漁業資源量, 魚類의 產卵場과 回遊習性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으므로 漁業資源의 營理와 保存을 위한 計劃樹立 및 施行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沿岸國들은 이미 開發된 漁場에 대하여 投資가 지연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 自國漁場에 대한 外國漁船入漁規制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漁業先進國들과의 漁業協定締結 및 合作投資事業을 수행하여 그들의 目標를 달성하고자 한다.<sup>5)</sup>

最近에 와서 많은 沿岸國들이 漁業發展을 위하여 漁業先進國들과의 合作投資事業을 많이 요청하는 것은 漁場 및 漁業資源情報의 獲得과 漁業 및 經營技術 習得에 큰 效果가 있을 뿐 아니라 自國 漁業發展에 필요한 資金確保라는 면에서 유익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沿岸國은 漁業發展을 통해 自國民의 雇傭增大와 食糧需要增大에 대처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도 漁業先進國과의 合作投資 事業遂行은 상당히 유익하다. 한편 漁業先進國들은 沿岸國 海域에 入漁하기 위한 다른 手段이 없기 때문에 漁業合作投資事業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沿岸國의 대표적인 예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이다.

### III. 遠洋漁業 國際化 戰略의 代案

#### 1. 沿岸國의 漁業政策

200海里 經濟水域을 宣布한 각 沿岸國은 自國漁業의 開發과 振興策을

5) 朱尤一等, 海外漁業合作事業의 効率的 推進方案, 農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C-85-5, 1985.12.

施行하기 위해, 自國水域에 있어서의 外國漁業의 活動에 대한 政策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를 類型別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sup>6)</sup>

(1) 入漁主體型은 自國漁業을 優先시키며 外國入漁는 自國에 餘分이 있을 경우 인정하되 장래 減少시킨다. 다만 外國入漁는 政府가 協定에 의하여 認定하는 나라가 많다. 合作投資事業은 自國漁業發展에 필요한 最小限度에 국한시키며 (加工業은 別途), 共產主義 國家에서는 施行이 곤란하다. 한편 海上買入加工, 技術提携 등에 의한 協力方法도 있다(美國, 카나다, EC, 스페인, 소련).

(2) 入漁·合作投資併存型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 入漁漸減, 合作投資推進型에 있어서 入漁는 先進國에서는 政府間協定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밖에 民間 個別베이스나 民間協定에 의하기도 한다. 合作投資의 推進方法에 있어서는 새로운 漁業, 새로운 漁場의 開發을 합작투자사업에 의존하는 국가와, 自國漁業開發의 相當部分을 合作事業에 의존하는 국가가 있다(호주, 뉴질랜드, 포르투갈, 모리타니아, 가나, 에쿠아돌, 페루, 미크로네시아).

(나) 入漁維持, 合作投資推進型은 自國漁業의 개발에 아직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나라로 당분간 入漁를 유지하고 入漁料 및 外國援助의 確保를 위해 努力함과 동시에 合作投資事業을 推進하며 自國漁業開發을 도모하려 한다(파푸아뉴기니아, 솔로몬, 길버트, 기타 南太平洋島嶼國, 나이지리아, 가봉, 마다가스카르, 소말리아, 가이아나, 수리남, 南예멘).

(3) 合作投資主體型에 있어서는, 外國漁業은 합작투자만을 원칙으로 하 고 入漁는 인정하지 않는 방침을 취하지만 합작투자사업 前年程度의 開發操業과 限定된 입어를 인정한다(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필리핀, 인도네시아, 몰다이브, 모로코). 또한 外國漁船의 入漁實績이 그다지 없고 新規開發을 합작투자사업에 기대하기도 한다(방글라데시, 인도, 멕시코 이외의 中南美 諸國).

6) 日本貿易振興會, 200カイリと世界の水産, 1978年 6月.

## 2. 漁場開發 進出方法

우리나라의 外國 新漁場 開發은 1957년에 처음으로 印度洋에 참치 延繩試驗出漁를 시작으로 그 동안 트롤, 가다랭이 채낚기, 은대구 底延繩, 도미延繩 및 새우 트롤 등 새로운 漁具漁法에 의한 水產資源開發뿐만 아니라 未開發 漁場인 뉴질랜드近海, 호주北部海域, 칠레近海, 알라스카灣 및 南永洋 크릴(Krill)漁場 試驗開拓을 실시하였다.

1978년부터 1988년까지 7차례 걸쳐 실시한 南永洋漁場 Krill 試驗操業 결과 印度洋쪽의 앤더비·월크스 漁場에 비하여 大西洋쪽의 스코시아漁場이 漁場性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79년 이후 中部 太平洋에 참치 旋網漁業의 시험出漁를 하여 主要漁場으로 성공시킨 사례도 있다.

최근들어서 새우트롤어업이 수리남, 브라질 위주에서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리베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어장등으로 진출을 확대중이며, 漁業協力方式을 통해 인도네시아, 가이아나, 모잠비크 등의 토롤어장에 새로 진출하고, 임베르데, 스리랑카, 몰디브 등에서 참치시험조업에 나설 움직임이 있다. 또 南部 印度洋 참치 流刺網漁場과 大洋洲 근해 및 대만동부해역의 장어통발어장에서도 新漁法에 의해 시험조업중에 있다. 한편 캐나다 200해리以遠·公海上의 赤漁(RED FISH) 어장의 개발과 大西洋 南部 조지아公海漁場개발도 추진중에 있다.

이 밖에 서울을 럼픽을 전후로 政府의 北方政策에 의거하여 民間業體를 중심으로 소련의 오후츠크海域, 불가해역, 中國 및 베트남水域에 合作事業 형식으로 進出하고 있다.

## 3. 共同事業方法

과거에 우리나라는 美國에서 共同事業方法을 活用하여 왔다. 즉 美國의 領海內에서 美國漁民들이 漁獲한 水產物을 韓國의 工母船들이 海上에서 收買하여 加工하는 事業을 展開하여 왔다. 이러한 共同事業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美國의 水產政策에 협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對美 漁獲権의 增量確保를 할 수 있었고, 美國側은 自國民間들의 所得增大 및 底撈魚漁

獲技術의 개발을 꾀할 수 있었다.<sup>7)</sup>

對美共同事業 窓口는 高麗遠洋과 미국의 FPA社, 東遠產業등 11個業體의 合作投資水產業體(joint-venture fisheries Ltd.)로 2元化하여 수행하였으며, 漁業實績도 '83年の 57천톤에서 '85年 17.7만톤, '87年 44.8만톤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같이 1988年 이후 미국 수산정책 기조변화로 인하여 對外國共同漁業쿼터가 감소하여 '90年 이후는 제로베이스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立場에서는 操業規制를 꾀할 수 있는 公海漁場을 확보하기 위하여 外交努力을 기울이거나, 새로운 代替漁場을 구해야 할 실정에 있다.

#### 4. 漁業移民方法

現在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 漁場에 企業移民方法으로 진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海域은 潛在資源量이 1,000만屯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 지속적인 生産가능량은 250만톤 정도로 판단되는 未開發된 主要漁場이다.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는 南永洋 크릴 資源開發의 進出基地 및 南美에 있는 諸沿岸國의 進出據點으로도 매우 重要한 지역이므로 政府에서는 1977년부터 이 地域의 漁場確保를 추진하여 왔다.

아르헨티나가 自國海域에 他國漁業會社의 企業移民에 의한 入漁를 개방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韓星企業이 漁場開發, 移民送出등 合作投資事業을 Productos Del Mar S.A.社란 現地國의 對方企業과 共同으로 전개하고 있다.

現在 政府支援資金 26억원을 포함, 總豫算 102억원 규모의 漁業移住事業을 198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社業內容은 漁業移住 122世帶, 住宅 80棟, 冷凍工場 1棟, 船舶 3척을 구입 운영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88年 현재 선원 48명과 가족 25세대 65명이 이미 移住하여 아르헨티나 츄브트州 마드린市에 정착하였으며, 선박도 이미 2척이 조업중에 있다.

漁業移民事業은 對象國의 각종規模 등으로 事業推進이 용이하지만은 않

7) 金會千, 韓國水產業의 海外進出戰略에 관한 研究, 수산경영론집, 1983.